25애니메이션제작지원(시즌, 본편, IP활용, 청장년층) 공고문

사업개요

o 사 업 명 : 25애니메이션제작지원(시즌, 본편, IP활용, 청장년층)

ㅇ 사업목적 : 다양한 우수 국산 애니메이션 콘텐츠 발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

o 협약기간: (25년도) 7개월 내외(예정) / (해당 시, 26년도) 10개월 내외(예정)

【연속지원 안내】

- 25년도 결과평가 합격 시, 26년도 협약 진행

- * (협약기간) 25년 2025.04.15.~2025.11.15.(예정) / 26년 2026.01.15.~2026.11.15.(예정)
- * 25년도 결과평가 탈락 시, 25년도 협약해제 및 26년도 협약 자동 취소
- 연속지원(25-26년, 2개년 지원)은 선정평가 고득점순으로 기회 부여

지원내용

No	구분	내용							
		선정규모**** 최대 전경규모**** (참고)							
		구분*	의내 지원금	단년도	연속지원***	합계	(음고) 24년 경쟁률		
		시즌		(25년도) 3개 내외	(1차년도 25년 / 2차년도 26년 1개 내외) 4개 내외	1:5		
		<u>시</u> 신편**	5억원	7개 내외	4개 내외	11개 내외	1:4		
1	지원규모	IP활용	20101	4개 내외	1개 내외	5개 내외	1:4		
'	시트미그	청장년층	8억원	3개 내외	1개 내외	4개 내외	1:5		
					데만 지원 가능, 구분별 고득점순	으로 협약대상	확정		
					^본 편 자동 접수	L A			
			•		은 선정평가 고득점순으로 기회		기계크 서저		
					연속지원 희망한다면 5등은 연속지원 희 라 구분별 선정규모 변동될 수 %		과제도 신성		
					<u>지 기반을 단당되고 단당을 다 기</u> 제작하는 「애니메이션산업 진흥		에 의한 애니메		
				<u>자등록</u> 을 필현					
		[애니메이	션업 신고	증 발급 안내]					
					률 제17조(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	L 등)>			
					ᇀ	- ,	2 자치구의		
2	지원대상	: -		하 같다)에게 신		7 7 0 0 (7 0 0 2			
	시즌네이	<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(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)>							
		4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·군수구청장은 별지 제5호 서식 의 애니메이션업							
		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.							
		* 주관기관은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제출 필수이나 참여기관은 해당없음							
		* 대기업은 기	. —						
					대 1개 기관까지만 가능 아래의 과제 목표 이상의 완본 영	사이 제자되 스	이느 애니메이셔		
		프로젝트	-762 6	1691 M.E.	기대의 되세 국표 의용의 단단 8	ㅇ의 제크로 ㅣ	썼는 에디테이는		
		* 4개 구분	중 택1 하	여 1개 과제만	· 지원 가능				
		* 버추얼 크리	에이터(유투	튀버, 아이돌 등)	, 숏폼 등 구분 별 조건 충족 하는 아	니메이션 프로젝	트 모두 지원 가능		
					지원분야				
					<u>끝나고 후속 시즌</u> 메인 프로덕션을 진행		•		
		시즌			0분 이상, 영화 20분 이상 완본 영상이 저 	작될 수 있는 프로젝	젝트		
				,	즈→영화로의 제작도 지원 가능				
		본편			<u>진행되지 않은 본편</u> 의 메인 프로덕션:				
3	지원과제				0분 이상, 영화 20분 이상 완본 영상이 저		*		
		ID ŠLO			<u>진행되지 않은</u> 메인 프로덕션이 진행 중	인 <u>국내 타 상르 곤</u>	<u> </u>		
		IP활용		<u>애니메이션</u> 프로 가 도아 시키즈 의	색트 D분 이상, 영화 20분 이상 완본 영상이 저	자되 스 이느 ㅠㄹ져	HE		
					D군 이경, 8와 2D군 이경 된근 8명이 시 진행되지 않은 메인 프로덕션이 진행				
		청장년층		<u> 날 애니메이션</u>					
					0분 이상, 영화 20분 이상 완본 영상이 저	작될 수 있는 프로젝	볙트		
					지정된 프로젝트	-1 -11			
					국 지분율이 최소 30% 이상이어		=		
					ㅐ 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충 50% 미마이 프로젠트	숙아는 쓰도젝트	=		
Ш	③ 접수 마감일 기준 국내외 방영이 50% 미만인 프로젝트								

No	구분	내용						
		* 시즌/본편/IP활용/청장년층 동일 기준으로 제출						
4	지원 시 제출물	[시리즈] ① 시나리오 60분 ② 애니메이션 영상 3분 이상 (인 ③ 공고문 내 평가자료 일체	트로·엔딩 제외)	[영화] ① 시나리오 완본 ② 애니메틱스 영상 20분 ③ 공고문 내 평가자료 {				
	* 시즌/본편/IP활용/청장년층 동일 기준으로 제출							
		[2025년 – 1차년도]						
5	지원과제 산출 결과물		(인트로·엔딩 제외)	[영화] 인트로·엔딩 제외) · 애니메이션 영상 20분 이상 (인트로·엔딩 저				
	최소 기준	[(해당 시) 2026년 - 2차년도]		-A41-				
	, ,_ , _	[시리즈] · 애니메이션 영상 80분 이상(/ 2개년 누적 160분 이상)		/ 2개년 누적 40분 0	는 이상 (인트로·엔딩 제외 상)			
6	총사업비 구성 및 자부담금	○ 총 사업비(=지원금+자부담금)의 10% 이상 현금 자부담금 의무 [예시] 총사업비 100원 = 지원금 90원 + 자부담금 10원 * 자부담금 ≥ 지원금/9 * 자부담금은 현금만 인정하며 현물 불인정 * 자부담금은 선집행 준수 원칙을 고려해 예산집행 계획 수립 【자부담금 우선 집행】 <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3조(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)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						
		· [용비] 등)						
		【내부인력 인건비 편성 시	유의사항]					
				인건비(*)				
-	사업비		대표자	직접인력(**)	간접인력(***)			
7	활용 범위	총사업비 지원금	편성 불가능	편성 가능	편성 불가능			
		자부담금 자부담금	편성 가능	편성 가능	편성 불가능			
		* 인건비 내 4대 보험료 지 ** 직접인력이란 제작지원 *** 간접인력이란 회계, 행정,	과제 수행을 위한 직	고용 인력(정규, 계약(상	용) 형태의 신입/경력 등)			

신청서 접수기간

ㅇ 공고기간 : 2025.02.20.(목)~2025.03.07.(금)

o 접수기간: 2025.02.20.(목)~2025.03.07.(금) 15:00까지(e나라도움 시스템 시간 기준)

* 접수기간 외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하니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.

* 마감일에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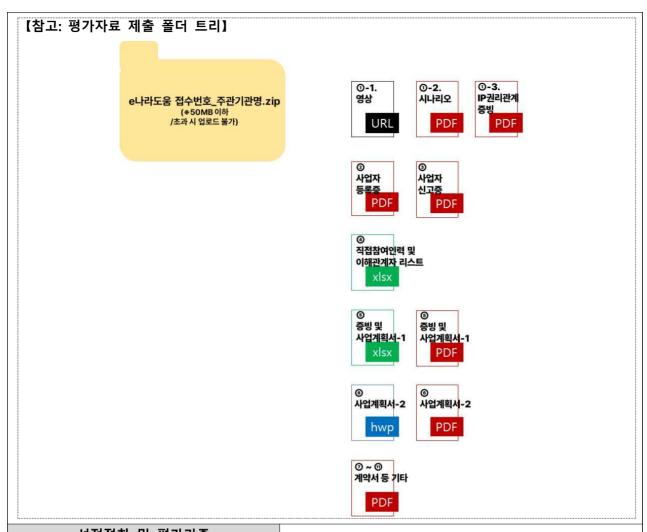
신청방법

- o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(KOCCA 홈페이지, 우편 및 방문, e-mail 제출 등 불가)
 -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평가자료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
- *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문의처 활용 바랍니다.
- ㅇ 평가자료 제출

【평가자료 제출 유의사항】* 평가자료 자세히 보기(클릭 이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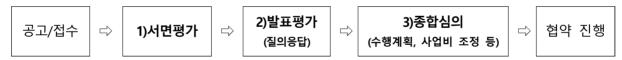
- ㅇ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, 추가로 평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- o 평가자료 중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 제외, 평가항목 0점 처리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음
- o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추후 허위·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, 협약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 질 수 있음

폴더명		파일명 양식 유형 주관 참여							
	01-1			니메이션 영상 3분 이상 (인트로·엔딩 제외)		URL	공통	1부	
	01-2	시리즈				PDF	공통	1부	
	01-1		애	니메틱스 영상 20분 이상 (인트로·엔딩 제외)	자율	URL	공통	1부	
	01-2	영화	시		양식	PDF	공통	1부	
	01-3	IP 권리 관	발계 (IF	원저작자인 경우) 저작권, 상표 등록증 등 증빙자료		PDF	공통	1부	
	01-3	증빙		원저작자가 아닌 경우) 애니메이션 제작 관련 계약서		PDF	공통	1부	
	02	사업자등록	증			PDF	0	0	
	03	애니메이션 * 신고서		발급 서류	PDF	0	Х		
	04	직접참여인	!력 및	이해관계자 리스트	지정 양식 1	xlsx	공통	1부	
		증빙 및 시	·업계획	서-1					
			시트7	(필수)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					
e나라도움 접수번호_ 주관기관			시트8	(필수)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		xlsx, PDF	공통		
명.zip (※50MB		증빙	시트9	(해당 시) 콘진원 주요행사 또는 시상식 수상작 사용 권리 확인서					
` 이하 /초과 시 업로드			시트10	(해당 시) 참여인력 지역 근무 확인서	지정 - 양식				
불가)	05		시트11	(해당 시)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				1부	
			시트1	01. 신청서	2				
		사업 계획서-1	시트2						
			시트3						
			시트4						
			시트5 04. 사업비						
			시트6	05. 수행기관					
	06		사업	지정 양식 3	hwp, PDF	공통	1부		
	07	(해당 시) 콘진원 주요행사 또는 시상식 수상작 사용 권리 계약서				PDF	공통	1부	
	08	(해당 시) 코		PDF	공통	1부			
	09	(해당 시) 국	내외 부기	'사업(마케팅, 유통, 라이선싱 등) 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(계약서, 의향서 등)	자 <u>율</u> 양식	PDF	공통	1부	
	10	(해당 시)	국내외	방영(편성)/배급 등 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(계약서, 의향서 등)		PDF	공통	1부	
	11			PDF	공통	1부			
				당 시) 기타(신청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등) 					



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o 선정절차 안내



1) 서면평가

- (평가방법) 접수 완료한 과제 대상으로 서면평가
- (점수산출) 서면평가 개별 평가위원 최고/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점수의 **평균이 70점 이상**을 득한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규모 1.5배수 내외에 한 해 발표평가 참여 기회 부여
 - * 선정규모 2배수 이내로 접수될 경우, 서면평가를 겸한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평가 기준 적용 예정(종합점수는 서면평가 가중치 미적용하여 발표평가 점수와 동일한 것으로 갈음)

[서면평가 운영방식]

- ① 서면평가는 구분과 상관없이 동일 평가위원, 동일 평가기준으로 심사합니다.
- ② [시즌] 접수작은 고득점순으로 선정규모의 1.5배인 6개 내외 대상으로 발표평가 참여 기회 부여합니다.
- ③ [P활용] 접수작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규모의 1.5배인 8개 내외 대상으로 발표평가 참여 기회 부여합니다.
- ④ [청장년층] 접수작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규모의 1.5배인 6개 내외 대상으로 발표평가 참여 기회 부여합니다.
- ⑤ [본편] 접수작은 아래와 같으며, [본편] 접수작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규모의 1.5배인 16개 내외 대상으로 발표 평가 참여 기회 부여합니다.
 - [본편]으로 공모에 신청한 접수작
 - [IP활용] 발표평가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접수작
 - [청장년층] 발표평가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접수작

- (평가기준) 참여인력, 사업비, 과제기획, 과제내용, 기대성과 총 100점 만점 및 배점 외 가산점(3점)

1	평가지표	평가항목	배	점		
구분지표 세부지표		ত্ৰ।	배점	소계		
참여인력	참여인력 전문성	대표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 여부	1	2		
급적단력	참여인력 참여율	참여인력의 인력구성과 참여율 적정성	1			
TOTH	사업비 규모					
사업비	사업비 조달계획	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	1	2		
	과제 이해도	목표 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	5			
과제기획	기획 독창성	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	5	20		
파제기록	기획 완성도	기획안의 착수 개시가능 수준의 구체성, 현실성 확보여부				
	유통 구체성	세부적인 유통계획(플랫폼 활용 등)	5			
	대중성(상업성)					
과제내용	완성도					
	경쟁력	시장의 타 작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	8			
	투자 매력도	트자 매력도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제작비 조달을 위한 투자유치 가능성				
		(또는 제작비 확보 수준) 및 구체성	17			
기대성과	경제적 성과	방영/배급, 라이선싱 등의 국내외 매출 규모 및 구체성	15	52		
	대중적 성과	대중의 소비·향유 관심도 및 파급효과	10			
	목표 타당성	제시한 목표(제작비투자(확보), 방영/배급, 매출 등)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여부	10			
	합 계					
	가산점 '22~'24년도 행사 및 시상식에서 수상한 프로젝트			3		
기산심		* 수상작 IP(해당 시, 수상작 기업)로 지원 신청 시		<i></i>		

2) 발표평가

- (평가방법) 서면평가 통과한 과제 대상으로 발표평가(질의응답 포함)
- (점수산출) 발표평가 개별 평가위원 최고/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을 득한 과제 대상으로 종합점수(=서면평가 40%+발표평가 60%) 산출하여 고득점 순으로 종합심의 대상 선정

[발표평가 운영방식]

- ① 발표평가는 구분과 상관없이 동일 평가위원, 동일 평가기준으로 심사합니다.
- ② [시즌] 발표평가 대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4개 내외 선정합니다.
- ③ [IP활용] 발표평가 대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5개 내외 선정합니다.
- ④ [청장년층] 발표평가 대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4개 내외 선정합니다.
- ⑤ [본편] 발표평가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, [본편] 발표평가 대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11개 내외 선정합니다.
 - [본편]으로 분류되어 발표평가 참여 기회 부여받은 접수작
 - [IP활용] 최종 선정(5개)에 들지 못한 발표평가 대상자
 - [청장년층] 최종 선정(4개)에 들지 못한 발표평가 대상자
- (평가기준) 수행기관, 과제내용, 기대성과, ESG 총 100점 만점

【발표평가 계량점수 안내】

- o 제출대상 : 발표평가 대상자(* 서면평가 이후 안내)
- o *계량점수1) 수행기관(재무건전성 5점)
- 발표평가 참여자 대상 신용조사 진행 예정으로 <신용조사 정보등록>안내에 따라 기한 내 서류 제출
- 미제출 또는 등록 지연 시 발표평가 참여 불가
- 주관기관 기준으로 발표평가 시 5점 한도 내 배점 적용
 - · AAA~BBB 5점, BB~B 3점, CCC 1점, CC이하 0점
- o **계량점수2) ESG(일자리 창출 2점, 지역기업 3점, 표준계약서 1점)
- 일자리 창출 : 일자리 창출 계획 정성 평가
- 지역기업 : 주관기관 지역기업 확인서 제출 시 3점
- 표준계약서 :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서(지정양식) 제출 시 1점

평가지표		평가항목	배	점			
구분지표	세부지표	5/18=	배점	소계			
수행기관	재무건전성	선전성 기업신용데이터 정보 조회					
	대중성(상업성)	일반 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	7				
과제내용	완성도	질적으로 완성된 정도	5	17			
	경쟁력	시장의 타 작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	5				
	투자 매력도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제작비 조달을 위한 투자유치 가능성 (또는 제작비 확보 수준) 및 구체성		24				
기대성과	경제적 성과	방영/배급, 라이선싱 등의 국내외 매출 규모 가능성 및 구체성	21	72			
	대중적 성과	대중의 소비·향유 관심도 및 파급효과	15				
	목표 타당성	제시한 목표(제작비투자(확보), 방영/배급, 매출 등)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여부	12				
	일자리 창출	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	2				
ESG	지역기업(계량)	주관기관 지역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 * 사업자등록증 내 본점 소재지 기준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0점, 그 외 지역 3점 * 주관기관의 참여인력(인건비 편성인력) 중 30% 이상이 지역 소재 본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 부여	3	6			
	표준계약서(계량)	량) 보준계약서 활용 계획서 제출 여부 * 미제출 0점, 제출 1점					
합계							

3) 종합심의

- (심의방법) 종합점수(=서면평가 40%+발표평가 60%) 고득점 순으로 종합심의(수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등)
- (심의결과) 종합심의(수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등)에 따라 총사업비(=지원금+자(기)부담금) 확정하여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협약대상자 확정하며, 협약 포기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

【종합점수(=서면 40%+발표 60%) 동점 처리기준 및 종합심의 유의사항】

- ㅇ 종합점수 동점 처리기준
-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에게 우선순위 부여
- · 발표점수도 동점인 경우, 발표평가 평가기준 중 배점이 가장 높은 평가지표에서 고득점한 과제에 우선순위 부여
 - * 구분지표 합계가 동점일 경우 배점이 가장 높은 세부지표에서 고득점한 과제에 우선순위 부여
- ㅇ 종합심의 유의사항
- · 종합심의에 따라 협약대상자는 신청 사업비 조정(삭감 등)될 수 있으며, 수행계획서 등 수정 요청받을 수 있음

지원금 지급

- ㅇ 협약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
 - * 지급 방식(횟수, 금액 등)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 - 1차 지원금 : 확정된 지원금의 70%
 - 2차 지원금 : 중간점검(예산집행 부문)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(지원금의 30%)

지원요건

-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.
- ※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'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'를 통해 확인하며,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※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.
 - 1.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진흥원)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(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. 단, 개별 수행 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,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)
 - 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

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

- 3. 동일한 사업계획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(간 접보조금 포함)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
- 4. 국세, 지방세,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
- 5. 「보조금법」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- 6.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
- 7.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,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
- 8. 애니메이션 IP 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되지 않은 프로젝트
 - *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로 한국 지분률 30% 미만인 프로젝트
 - * 제작 완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미충족하는 프로젝트
- 9. 접수마감일 기준 국내외 방영이 50% 이상인 프로젝트
- 10. 협약일 기준「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애니메이션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자

문의처

ㅇ 사업문의

【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안내 페이지】

- o (접속하기) 안내 페이지 이동하기(클릭 이동)
- ㅇ (유의사항)
 - 해당 페이지는 <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제작지원> 안내를 위해 운영하는 임시 페이지입니다.
 - * 임시 안내페이지는 25애니메이션제작지원 공고기간 동안만 운영합니다.
 - 공고 관련 해석상에 차이 발생 시 [한국콘텐츠진흥원(kocca.kr) > 알림마당 > 지원공고] 게시자료를 우선으로 합니다.
 - 해당 페이지 내용에 대한 수정/복제/편집/배포 등의 2차 가공이 엄격히 금지되며, 임의 사용 시 법적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전화 061-900-6411 / e-mail 1111yyyji@kocca.kr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 고성, 반말, 폭언, 욕설 시문의 대응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문의사항 발생 시, 공고자료 및 안내 페이지(FAQ 등) 우선 확인 바랍니다.
- o 애니메이션산업팀 사업설명회

【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산업팀 사업설명회】

- ㅇ (일시) 2025.02.27.(목) 14:15
- o (장소) 광화문 CKL 16층 컨퍼런스 룸
- * (주소)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CKL 기업지원센터 16층
- * 주차 지원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.
- o (신청) 사전 신청하기(클릭 이동)
- * ~ 2025.02.26.(수) 13:00까지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 바랍니다.
- * 사업설명회에서 시간 관계상 대면 질의응답 시간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. 관련 문의사항은 사전 신청을 통해 취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.
- * 단순 업무 일정(평가 일정, 결과 안내 등)에 대한 문의는 지양 바랍니다.
- o e나라도움 문의 : 전화 1670-9595 / 사용자 매뉴얼(접속 URL) / 동영상 자료(접속 URL)

콘텐츠금융제도

- o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투·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*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 - *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www.kocca.kr) > 알림마당 > 금융지원
- ㅇ [참고] 2025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.
 -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(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)
 - *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
 - :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 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(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)
- o 콘텐츠금융제도(투자·융자 유치 지원) 문의
 - 콘텐츠가치평가센터(☎ 02-6441-3658, assess@kocca.kr)
- ※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

기타사항

[신청/평가]

- o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, 아래의 경우 평가에서 0점 처리될 수 있음
 -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(미제출)한 서류가 있는 경우, 날인(서명) 필요 서류에 날인(서명) 없이 제출했을 경우,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,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
- o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, '신용조사 정보등록'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해야 함.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.
- o 공모에 참여하는 <u>수행기관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은</u>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시행하는 선정절차에 동의하며 성실하게 임해야 함
- o 공모에 참여하는 <u>수행기관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은</u> <u>선정결과에 대하여 별도 이의신청 절차가</u> 없으며 이의신청이 불가능함을 숙지하여야 함
- o 공모에 참여하는 수행기관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은 <u>타 지원 과제에 대한 근거 없는 공개적 비방</u> 및 비난 등은 삼가길 바람
- o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한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참여이력(공모, 협약 등)은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**[협약]**
- o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안내받은 기한 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미제출,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제외될 수 있음
- o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,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(관련: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」제6조)
 - 1.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, 2. 사업비의 관리, 집행 및 정산, 3.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, 정보공시, 감사보고서 제출,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, 4.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o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제15조 및 제15조의2,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」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·관리하여야 함

[수행]

- o 콘텐츠지워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(PC 등)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o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(통장사본 등)을 제출하여야 함(관련: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」제37조)

-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(관련: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」제37조, 제42조)
- o 선정 이후 협약서 '성과관리' 조항에 의거,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
 - *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
- o (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포함시)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와 연계하여 평가 예정임
- o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,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(관련: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」제50조)
- o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
 - 바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 인 경우 제외)
 - 사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 - 아.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
 -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·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,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(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-5678)
 -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
 - *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는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,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(단,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,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)
 - *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: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,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,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(단,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)

폴더명	파일명		양식	유형	주관기관	참여기관	유의사항	
	01-1		애니메이션 영상 3분 이상 (인트로·엔딩 제외)		URL	공통	1부	o 시즌, 본편, IP활용, 청장년층 구분 선택 시, 필수 제출
	01-2	시리즈	시나리오 60분		PDF	공통	1부	○ 시근, ヒ근, Ir≡o, 'oo clo ⊤ 또 단역 시, 표구 세골 * 소시리즈> 프로젝트로 지원 시, 해당하는 자료 제출
	01-1	~ **	애니메틱스 영상 20분 이상 (인트로·엔딩 제외)	#100hu	URL	공통	1부	* <영화> 프로젝트로 지원 시, 해당하는 자료 제출
	01-2	영화	시나리오 완본	자율양식	PDF	공통	1부	→* 지원 시 제출물의 완성도(사운드, 음악, 효과, 대사 등)는 제한 없으나 기준 분량은 충족하여야하며, 미충족 시 평가대상 제외 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
		IP권리관계	(IP 원저작자인 경우) 저작권, 상표 등록증 등 증빙자료		PDF	공통	1부	o 시즌, 본편, 청장년층 구분 선택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
	01-3	증빙	병 (IP 원저작자가 아닌 경우) 애니메이션 제작 관련 계약서		PDF	공통	1부	o IP활용 구분 선택 시, 필수 제출
	02	2 사업자등록증			PDF	o	o	o 사업자등록증 PDF 1개로 제출 * 공고일 이후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제출 권고 ex)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1장+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1장 → 사업자등록증 파일 1개(총 2장기로 제출
	03	03 애니메이션업 신고증(또는 신고서)			PDF	o	х	o 주관기관 애니메이선업 신고증 PDF 제출 * 주관기관 신고증만 제출, 참여기관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* 신고서로 대체 제출 시, 협약일까지 신고증 제출해야함
	04	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		지정양식1	xlsx	공통	- 1부	○ 작성 후 편집 가능하도록 xlsx 제출 * PDF로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
		증빙 및 사업계획서-1				공통	1부	o 작성 후 편집 가능하도록 xlsx 제출 * PDF로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
	05	시트7	증빙-(필수)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			공통	1부	o 주관기관 대표자, 참여기관 대표자(해당시), 과제책임자, 총감독(또는 프로젝트의 우수성을 대표할 수 있는 참여 인력), e나라도움 신청자 총 5인 필수 제출
e나라도움 접수번호_		시트8	증빙-(필수) 지원사업참여기준체크리스트		xlsx, PDF	공통	1부	
주관기관명.zip		시트9	증빙-(해당 시) 콘진원 주요행사 또는 시상식 수상작 사용 권리 확인서			공통	1부	o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기준 충족 시 작성 o 해당없을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
(※50MB 이하 /초과 시 업로드 불가)		시트10	증빙-(해당 시) 참여인력 지역 근무 확인서			공통	1부	o 주관기관 기준 중족 시 작성 * 주관기관이 기준 충족하여야 하며, 참여기관 기준 충족하여도 가점 해당없음 o 해당없을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
		시트11	증빙-(해당 시)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	지정양식2		공통	- 1부	o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기준 충족 시 작성 o 해당없을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
		시트1	01. 신청서			공통	1부	
		시트2	02. 기본정보			공통	1부	
		시트3	03-1. 참여인력 정보			공통	1부	
		시트4	트4 03-2. 참여인력 구성			공통	1부	
		시트5	04. 사업비			공통	1부	
		시트6	05. 수행기관			공통	1부	
	06	5 사업계획서-2(06. 과제기획, 07. 과제내용, 08. 기대성과)			hwp, PDF	공통	1부	o hwp 및 PDF 총 2개 제출 * 발표평가 시, 발표자료로 활용 예정
	07	(해당 시) 콘	진원 주요행사 또는 시상식 수상작 사용 권리 계약서		PDF	공통	1부	
	08	08 (해당 시) 국내외 투자 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(투자 계약서, 공통제작 계약서, 의향서 등) 09 (해당 시) 국내외 부가사업(마케팅, 유통, 라이선싱 등) 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(계약서, 의향서 등) 10 (해당 시) 국내외 방영(편성)/배급 등 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(계약서, 의향서 등) 11 (해당 시) 기타(신청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등)			PDF	공통	1부	o PDF 제출
	09				PDF	공통	1부	ㅇ 계약 세부내용 블라인드 가능하나, 계약대상(날인 필수) 및 계약금액은 노출 필수
	10				PDF	공통	1부	
	11				PDF	공통	1부	o PDF 제출